

『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1차)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○ 구미소방서 신축부지 매입

건축한지 40년 이상되어 노후화된 구미소방서의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, 구미소방서를 신축하도록 하여 소방관의 근무환경 개선과 더불어 소방관의 훈련장 및 시민 소방안전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□ 구미소방서 신축부지 매입

- 위 치 : 구미시 공단동 206, 209-1번지
- 대 상 : 토지 8,429m²(2,550평)
- 기준가격 : 8,966백만원(공시지가)
- 매입기간 : 2019 ~ 2023(5년)
- 재원조달 : 시비 100%
- 계약방법 : 수의계약(5년 분납조건 계약)

4. 참고사항

○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제20조, 제24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, 제9조, 제13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관리계획안은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6호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,
- 2019년도 수시-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노후화된 구미소방서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1건임.
- 구미소방서 뒤편 공단동 206번지 및 209-1번지를 매입하여 소방서 청사 신축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대시민 안전 및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고, 소방관 훈련장 및 체험 위주의 소방안전 교육장 건립을 통해 소방관의 재난대응능력 제고 및 시민 안전의식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, 상정된 안과 같이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약 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이후 사업의 보류, 변경 등 주요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의회와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